연구총서 22-AB-05

www.kicj.re.kr

공정한 병역문화를 위한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강화 방안

Measures to prevent and strengthen crackdowns on conscription offenders for a fair military service culture

승재현

KICJ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공정한 병역문화를 위한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강화 방안

연구책임자

승　재　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학박사

발간사

‘공정한 병역문화를 위한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 강화 방안’의 연구는 대한민국 병역의무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병역을 확립하고, 이에 반하는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병무사범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그 행태가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초래와 공정하게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현재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은 병무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는 복무기관에서 복무관리 및 고발업무를 수행 하는 등 분산 되어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역면탈(기피·감면 목적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행위) 및 신체검사 대리수검 범죄에 대해서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단속하고 있지만 행방불명·병역기피 등 범죄에 대해서는 지방청장이, 복무이탈, 복무위반 행위 등 범죄에 대해서는 복무기관장 등이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너무 넓은 영역에서 다기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수시과제 특성에 맞게 현재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행방불명자’에 대해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및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 광역수사 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특히 ‘행방불명자’ 중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소집 행방불명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았고 본인이 향후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 소집대상임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범위에 편입하되, 최초 병역판정검사시 ‘행방불명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충안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행방불명자’중에는 불우한 가정환경 등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상적으로 사회에 나와 생활 할 수 있도록 범죄행위는 처벌을 받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경위를 면밀히 살펴 생계곤란 또는 질병 등 사유 병역감면 또는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병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모쪼록 이번 연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병영문화를 정착하길 바랍니다.

2022년 10월

연구위원 **승 재 현**

목 차

국문요약 ·· 1

제1장

서 론 ·· 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7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9

제2장

특별 사법 경찰 직무 범위와 조직 현황 ·· 13

제1절 특별사법경찰 개관 ·· 13

1. 서론 ·· 13

제2절 특별사법경찰 특징·법적근거·직무범위 ·· 15

1. 특별사법경찰의 특징 ·· 15

2. 특별사법경찰권 법적 근거 ·· 17

3.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와 수사관할 ·· 21

제3절 특별사법경찰의 현황 ·· 27

1. 특별사법 경찰 연도별 현황 ·· 27

2. 중앙행정기관별 특별사법경찰 지명 현황 ·· 27

3.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 29

제3장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와 조직 현황 33
제1절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33
1. 개요 33
2.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법적 근거와 직무범위 34
제2절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직 현황 35
1.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직 개요 35
2.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운영 현황 36
3. 병무청 특별사법 경찰의 주요 시설 및 수사 장비 37
제3절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예산과 관할구역 38
1.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예산 38
2.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관할 구역 39

제4장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현황 41
제1절 병역기피자·행방불명자 발생 현황 및 원인 43
1. 최근 5년간 병역기피·행불자 발생 현황 43
2. 연도별 국외 미귀국자 발생 원인 43
제2절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발생·색출·잔유 현황 44
1. 연도별 발생·색출·잔유 인원 44
제3절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형사처분 현황 45
1. 병역 기피자 형사처분 현황 45
2. 행방불명자 형사처분 현황 45

제5장
병무사범 관련 법령 검토 49
제1절 병무 사범 관련 법령 검토 49
1. 정의 49

2. 병무사범의 구체적 검토 ······ 50
제2절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62
1. 「병역법」 제76조 ······ 62

제6장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개선 방안 ······ 67

제1절 병무사범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 논의 ······ 67
1.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도입 및 확대 논의 ······ 67
제2절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사법경찰권 수사권 확대(안) ······ 68
1. 분류지표의 개발배경 및 사용목적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8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1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평가 ······ 72
제3절 병무사범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개선 방안 ······ 74
1.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범위 확대 논의 ······ 74
2.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에 '행방불명자' 포함 여부 ······ 74
3. 개선방안 ······ 78
4. 특별사법경찰 광연 수사 체계 개편 방안 ······ 82

제7장
결 론 ······ 87

참고문헌 ······ 91

Abstract ······ 93

표 차례

[표 3-1]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인력현황 ··· 35
[표 3-2] 연도별 수사실적 ··· 36
[표 3-3] 유형별 수사실적 ··· 36
[표 3-4] 주요 수사장비 보유현황 ··· 37
[표 3-5]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예산 ··· 38
[표 3-6] 수사관할 및 관할 지방검찰청 ··· 39
[표 5-1] 병역법상 처벌 규정 정리 ··· 61

그림 차례

[그림 3-1]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직도 ··· 35

국문요약

병역법 제69조는 **병역의무자**(현역 및 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1]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2]

그러나 병무청은'행방불명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84조 제2항[3]을 적용해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자로 **경찰관서에 고발**하고 있으나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쉽게 협조를 요청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의 협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먼저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 적용에 있다**. 전입신고 불이행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있다면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

1)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송요청을 받은 전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轉出對象者)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전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④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면 제1 항에 따른 전입신고서와 대조·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병역법」 제69조

3)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② **제69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것이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을 때만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처벌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여 보겠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 '행방불명자'를 찾아, 수사를 통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밝혀,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100% **구약식**[4] **사건**이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안이 있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행방불명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2020년부터 '행방불명자'문제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일으켰다. 병역 의무자가 거주지를 다른곳으로 이전한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병역의무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현재 '행방불명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행방불명자'도 정부에서 지급하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고 또 수령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병역법 제61조에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 심신장애 · 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5] 다만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하는 수밖에 없다.**

결국 행방불명자의 신원이 발견되기 전까지 병역의 처음과 마지막을 담당하고 있는 병무청은 행방불명자를 찾아 병역의무를 부과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정의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모든 국민께서 동의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방불명자'에 대한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 **병역법 제86조에 특별사법경찰권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현재는** 병역기피하거나 감면 목적 신체손상, 속임수를 쓴 경우에만 수사권이 있는데

---

4) 정식 재판절차가 아니라 검사가 벌금액을 정해 법원에 서면으로 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벌금액을 선고형으로 하여 재판절차가 종결되는 것을 말함

5)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확대해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수사권 확대지만 같은 조항에서 빠져있던 수사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의 범위를 「병역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범죄와 같은 법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에 외에 추가로 **「병역법」 제61조에 규정된 '행방불명자'에 대해 수사권을 명시하는 방법**이다.

'행방불명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병역의무자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병역과 관련된 영역에서 발생된 사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도망하는 경우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 이행일을 연기하고 있다. 다른 어떤 입영연기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행방불명자'의 **나이가 38세에 이르게 되면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병역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행방불명자'에 대해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는 경우 **행방불명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되어야 한다.**

병역법 제81조는 **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사항 확인·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병무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병역이행사항 확인·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행방불명자'의 첫 수사는 바로 행방불명자의 소재파악에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필요하다. 다만 개인정보가 불법하게 오·남용될 수 있는 경우를 많이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종류를 명시하고, 이를 취득한 자료를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국방부와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최고수준의 징계와 처벌 규정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인정보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에서 행방불명자의 수사권이 부여되는 경우 **행방불명자의 개인정보의 범위와 종류를 병역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개별적인 사건마다 개인정보의 범위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서 론

제1장

서 론

제1절 |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헌법」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6]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7]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병역법」제3조에서는 병역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8] 또한 병역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9] 특히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10],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되도록 하고 있다.[11]「병역법」제84조 ~ 제96조에서는 헌법상의 의무인 병역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병역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병무청은 병무사범 예방과 단속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 의무 위반의 형태가 다양화 되고, 그 수법도

6) 「헌법」 제39조 제1항
7) 「헌법」 제39조 제2항
8) 「병역법」 제3조 제1항
9) 「병역법」 제3조 제2항
10) 「병역법」 제3조 제3항
11) 「병역법」 제3조 제4항

과학화, 지능화 되고 있어 병무사범을 일망타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 병역의무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이 초래된다. 이러한 병무행정의 불신은 공정하게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병역은 국가 모든 행정 영역에 있어서 가장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불공정한 혜택이 주어지는 순간 헌법상의 국방의무에 대한 근간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병무사범에 대한 철저한 예방 및 단속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개선과 보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 된다.

제2절 |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병무사범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병무 사범 중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거주지이동신고불이행[12], 병역면탈[13], 입영의 기피 등[14], 복무이탈[15], 복무위반[16],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17]의 발생원인, 특성을 분석해 효과적인 예방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현재의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와 조직 분석을 통해 앞서 병무사범을 발본색원하기에 충분하지를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를 확대 및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 및 광역화를 통해 효과적인 단속체계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방법으로는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 병역 면탈, 입영기피, 복무이탈, 복무 위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등 병역법 위반 현황 실태를 조사하고, 문헌연구를 통해 병무사범에 대한 단속체계 분석, 병무사범 단속을 위한 법규 내용 및 법체계 분석,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병무사범의 예방과 효과적인 단속체계를 제안함으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을 담보하고, 병역 이행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병역문화를 마련하고자 한다.

---

12) 「병역법」 제84조 제2항
13) 「병역법」 제86조
14) 「병역법」 제87조 및 제88조
15) 「병역법」 제89조의2
16) 「병역법」 제89조의3
17) 「병역법」 제94조

특별 사법 경찰 직무 범위와 조직 현황

제2장

특별 사법 경찰 직무 범위와 조직 현황

제1절 | 특별사법경찰 개관

1. 서론

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10에 규정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10에 따르면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8]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19]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 진행하여야 한다.[20]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21]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22]

특별사법경찰은 1956년에 도입되었다. 당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신규 제정 이유로 “삼림·해사·전매·세무등 특수행정분야에 관한 범칙사건을 일반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수사케 함은 그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부적당하고 매우 곤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거하여 이들 특수행정분야에

18)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1항
19)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2항
20)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3항
21)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4항
2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5항

관한 범칙사건을 수사하는 자 및 그 직무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이들 특수행정분야를 직접 담당하여 그 방면에 정통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하여 범죄수사에 신속과 철저를 기하려는 것"라고 밝히고 있다.[23] 이후 119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 참고.

제2절 | 특별사법경찰 특징·법적근거·직무범위

1. 특별사법경찰의 특징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형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범죄 이외에 행정의 복지국가적 비대현상에 기인하여 상시법적 성격을 갖는 행정범이 증가함에 따라 수사의 전문성, 효율성, 신속성, 당해 행정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범죄에 대한 수사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이러한 제도의 특성은 전문성, 격리성, 현장성, 고도의 보안성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24)]

가. 전문성

특수행정 분야에 관한 범죄를 일반사법경찰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방면에 정통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담당 행정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는 것이 범죄 수사에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25)] 즉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는 수사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특수분야의 범죄를 일반사법경찰이 담당하는 것은 관련 새로운 전문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신속한 단속과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미 전문지식을 갖춘 특별사법경찰이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26)]

이러한 전문성에 따라 병역면탈 단속, 출입국 관리, 근로감독, 식품·의약품, 관세, 공중위생, 환경, 전기통신, 원산지 표시, 외화획득용 원자재 수입, 가축·식물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27)]

---

24) 안정진,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10면 인용.
25) 이영희,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징병검사 병역 면탈 범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4, 8면 인용.
26) 이영희,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징병검사 병역 면탈 범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4, 8면 인용.
27) 이영희,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징병검사 병역 면탈 범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4, 9면 인용.

나. 격리성

교정시설이나 해선, 항공기, 철도 등 격리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일반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이 미치기 어려워 일반사법경찰관리를 대신하여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격리성의 원칙에 따라 교도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대, 선박, 항공기, 철도공안 업무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28)]

다. 현장성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법 위반 사범에 대한 일차적 적발이 용이하고, 현장 단속이 특히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29)]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산림보호, 소방, 문화재보호, 계량검사, 공원관리, 어업감독, 광산보안, 국가보훈, 차량운행, 관광지도, 농약·비료, 하천감시 업무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30)]

라. 고도의 보안성

국가정보원이나 군 사법경찰관리, 대통령 경호처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특정한 국가정책이나 특수분야의 경우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어 일반사법경찰 관리가 수사를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31)]

---

28) 안정진,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11면 인용.
29) 이영희,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징병검사 병역 면탈 범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4, 9면 인용.
30) 이영희,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징병검사 병역 면탈 범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4, 9면 인용
31) 이영희,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징병검사 병역 면탈 범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4, 9면 인용

2. 특별사법경찰권 법적 근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支所)의 장, 소년원 또는 그 분원(分院)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支院)의 장,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 교정시설 순회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32] 또한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특별시·광역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에게도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33]

또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며[34], 해선(海船)[연해항로(沿海航路) 이상의 항로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 또는 적석수(積石數) 2백 석 이상의 것]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사무장 또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의 해원(海員) 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35] 이와 함께 국립공원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은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경범죄 처벌법」상의 범칙행위 중 일부에 대해 현행범인 경우에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36] 금융감독원 또는 그 지원이나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직원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

32)「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
3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4조
3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35)「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
36)「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그 밖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37]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 역시특정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38]

이 외에도 특별사법경찰은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 · 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3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53개 호를 정해 행정 각부처 별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40]

---

3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
3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4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 · 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도소 · 소년교도소 · 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 보호감호소 · 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의2.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 · 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 · 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6. 특별시 · 광역시 · 도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와 국유림 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 · 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시 · 군 · 구 또는 읍 · 면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 · 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8.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근무하며 식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근무하며 의약품 · 화장품 · 의료기기 단속 사무 및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험 · 검사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0.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2.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13. 국립학교에 근무하며 그 학교의 실습림 및 관리림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4. 문화재청과 그 사무소 · 지구관리사무소와 출장소 · 현충사관리소 · 칠백의총(七百義塚)관리소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또는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근무하며 문화재의 보

호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5.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검사공무원
16. 「자연공원법」 제34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같은 법에 따른 공원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7.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18.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19.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관
20.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2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공중위생에 관한 단속 사무
나.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신건강증진시설 입·퇴원 또는 입·퇴소, 시설 내 인권침해 및 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사무
21의2. 「검역법」에 따른 검역공무원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
22. 환경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무선설비,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설비, 감청설비,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4.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특별시·광역시·도 및 그 산하 건설사업소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차량운행제한 단속 사무 및 도로시설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5.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관광지도(觀光指導)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6.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7. 여성가족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청소년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8.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단속 사무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농수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축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마.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인삼에 관한 단속 사무
바.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양곡에 관한 단속 사무
29.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0.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및 사용목적 변경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1.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농약 및 비료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2. 국토교통부,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근무하며 하천 감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3. 국토교통부,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근무하며 개발제한구역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그 지역본부,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근무하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방역관이나 동물검역관으로 임명되거나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관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5.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근무하며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5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36. 삭제 〈2017. 12. 19.〉
37.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근무하며 해양환경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8. 특허청,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8의2. 특허청에 근무하며 특허권 · 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 · 사용 · 누설 및 디자인권 ·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9.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근무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공원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1.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 기피 · 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2.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산림청,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근무하며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사 사무 및 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2의2. 「동물보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4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근무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4.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근무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검사 · 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5.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근무하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검사 · 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6.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근무하며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관련 조사 · 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7.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근무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조사 · 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검역관
49.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 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0.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며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조사 · 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

3.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와 수사관할

이와 관련하여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규정하고 있다. 제6조 따르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1] 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 훈련수당 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근무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53. 국토교통부,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근무하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 · 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 제5조제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도소 · 소년교도소 · 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2. 제5조제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교정청이 관할하는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3. 제5조제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재원자(在院者)나 가위탁자(假委託者)가 도주한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 다만, 그 도주에 관한 수사는 도주 후 7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4. 제5조제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감호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4의2. 제5조제4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39조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

5. 제4조와 제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가. 산림 보호 · 경영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속 관서 소관 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나. 목재제품 규격 · 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6. 제5조제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7. 제5조제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약사법」 · 「화장품법」 · 「의료기기법」 ·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약사(藥事)에 관한 범죄
8. 제5조제1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등대에서 발생하는 범죄
9.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
10. 제5조제1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및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

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
11. 제5조제1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 · 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12. 제5조제1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13. 제5조제1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14. 제5조제1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범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범죄,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지급수단 · 증권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수출입거래에 관한 범죄, 수출입거래와 관련되거나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3호 · 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의 용역거래 · 자본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외국환거래법」제8조제3항을 위반한 범죄,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외국환업무를 한 자와 그 거래 당사자 · 관계인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나.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재산국외도피사범
다.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라. 소속 관서 관할 구역 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 · 출항하는 공항 · 항만과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마.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 제2편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및 같은 편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출입물품 및 그 가공품(「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관련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수입물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약사법」 제42조, 제4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1조(「약사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5조의3 및 제66조, 「화장품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제1호,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6조를 위반한 범죄
15. 제5조제1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양식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범죄,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어선법」에 규정된 범죄 및 「내수면어업법」에 규정된 범죄
16. 제5조제1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광산안전법」에 규정된 범죄
17. 제5조제2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
18. 제5조제2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가. 제5조제21호가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나. 제5조제21호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규정된 범죄

다. 제5조제21호다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부터 제87조에 규정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88조에 규정된 범죄
라. 제5조제21호라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및 제54조에 규정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6조에 규정된 범죄
18의2. 제5조제21호의2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검역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40조에 규정된 범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1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82조에 규정된 범죄
19. 제5조제2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대기환경보전법」
나. 「물환경보전법」
다. 「소음·진동관리법」
라. 「화학물질관리법」
마. 「폐기물관리법」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 「환경분쟁 조정법」
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자. 「자연환경보전법」
차. 「환경영향평가법」
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타. 「하수도법」
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 「먹는물관리법」
거. 「토양환경보전법」
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머. 「수도법」(제83조제1호만 해당한다)
버. 「지하수법」(제37조제3호만 해당한다)
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만 해당한다)
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 「악취방지법」
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 「습지보전법」
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로. 「환경보건법」
모. 「석면안전관리법」
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0. 제5조제2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전파법」 중 무선설비나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범죄
나. 「전기통신사업법」 중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중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 · 제4항 및 제10조의3을 위반한 범죄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범죄
20의2. 삭제 〈2009. 4. 22.〉
21. 제5조제2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도로법」 제40조, 제46조, 제49조, 제52조, 제61조 및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범죄
22. 제5조제2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
23. 제5조제2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저작권법」 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24. 제5조제2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25. 제5조제2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범죄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마.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바.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26. 제5조제2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중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범죄
27. 제5조제3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7조에 규정된 범죄
28. 제5조제3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29. 제5조제3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천법」에 규정된 범죄
30. 제5조제3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
31. 제5조제34호에 규정된 가축방역관 또는 동물검역관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범죄, 식물검역관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식물방역법」에 규정된 범죄
32. 제5조제3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및 자동차 무단방치에 관한 범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규정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범죄
33. 삭제 〈2017. 12. 19.〉
34. 제5조제3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해양환경관리법」
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라. 「습지보전법」
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8조만 해당한다)
아. 「어촌 · 어항법」(제45조만 해당한다)
자. 「항만법」(제28조만 해당한다)
35. 제5조제3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35의2.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영업비밀의 취득 · 사용 · 누설에 관한 범죄 및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36. 제5조제3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9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93조에 규정된 범죄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범죄
37. 제5조제4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38. 제5조제4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병역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 기피 · 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범죄와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
39. 제5조제42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종자산업법」 제54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범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 및 제133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35조에 규정된 범죄
39의2. 제5조제42호의2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40. 제5조제4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범죄
41. 제5조제44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된 범죄
42. 제5조제45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43. 제5조제46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44. 제5조제47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45. 제5조제48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46. 제5조제49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47. 제5조제50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원자력안전법」 제116조부터 제118조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20조에 규정된 범죄
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9조, 제50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1조에 규정된 범죄
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30조에 규정된 범죄
48. 제5조제5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고용보험법」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범위 외의 수사는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규정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되는 제117조에 규정된 범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에 규정된 범죄
49. 제5조제52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
50. 제5조제53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범죄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다.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

제3절 | 특별사법경찰의 현황

1. 특별사법 경찰 연도별 현황

(단위: 명)[42]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중앙행정기관	7,566명	9,204명	10,026명	11,088명	11,530명
지방자치단체	7,985명	7,913명	9,069명	8,391명	9,241명
합계	15,551명	17,117명	19,095명	19,479명	20,771명

2. 중앙행정기관별 특별사법경찰 지명 현황[43]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인원(명)
1	기획재정부(관세청)	관세법 등 위반 범죄	461
2	기획재정부(국세청)	조세 관련 범죄	4,602
3	법무부(교소도등)	교도소, 구치소 등 내에서 발생한 범죄	822
4	국방부(기무사등)	군용물, 군사기밀보호법, 병역법 등 위반 범죄	197
5	병무청	병역법 위반 범죄	37
6	소방청	소방기본법 등 위반 범죄	29
7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위반 범죄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2
8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과)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8
9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 범죄	1,033
10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사업법 위반 범죄	36
1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식품방역법 위반 범죄	181

42) 2019년도 기준, 법무부 형사기획과 제공
43) 2019년도 기준, 병무청 제공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인원(명)
1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위반 범죄	10
13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산림, 임산물, 수렵 관련 범죄	239
14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	광산보안법위반범죄	11
15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상표법 등 위반 범죄	33
16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과)	청소년보호법위반 범죄	11
17	환경부(국립공원공단)	환경 관련 위반 범죄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죄	480
18	환경부(환경청)	환경 관련 위반 범죄	58
19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1,918
20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도로법 등 위반 범죄	57
21	국토교통부(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441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앙전파관리소)	전파법 등 위반 범죄	144
23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 범죄	121
24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어업자원보호법 위반 범죄	371
25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범죄	29
26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관리법 등 위반 범죄	43
2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약사, 보건범죄 위반 범죄	76
28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등 위반 범죄	12
29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설비 위반 범죄	20
30	대통령경호처	경호업무 수행 관련 범죄	5
31	행정안전부	안전분야 관련 범죄	4
32	환경부	환경 관련 위반 범죄	16
33	국토교통부	교통 등 불법행위 조사, 단속	6
34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범죄	15
35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	1
합 계			11,529

3.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44]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인원(명)
1	서울특별시	식품, 공중위생, 차량운행제한, 환경 등 관련 범죄	697
2	부산광역시	〃	477
3	인천광역시	〃	385
4	대구광역시	〃	239
5	대전광역시	〃	288
6	광주광역시	〃	243
7	울산광역시	〃	381
8	세종특별자치시	〃	83
9	경기도	〃	1,649
10	경상남도	〃	677
11	경상북도	〃	753
12	충청남도	〃	711
13	충청북도	〃	575
14	전라남도	〃	719
15	전라북도	〃	427
16	강원도	〃	625
17	제주도	〃	65
합 계			8,994

44) 2019년 기준 병무청 제공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와 조직 현황

제3장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와 조직 현황

제1절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1.개요

대한민국 국민 남성은 누구나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병역의무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며 남북이 분단되어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는 전 국민적 관심사로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병역면탈 행위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식되고 있다.[45)]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출범하기 이전에는 일반경찰이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일반경찰은 살인·강도 등 범죄 단속에 주력할 수 밖에 없고, 병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의 한계로 병역면탈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병무행정에 정통한 병무청 직원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병역면탈 범죄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46)]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2001년부터 병역법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권 확보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였다. 2008년 고의적인 어깨탈구 수술에 의한 대형 병역면탈 사건과 2009년 환자바꿔치기 사건을 계기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의 당위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병무청은 병역면탈 예방·감시 전담부서 설치, 병역판정검사 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특별사법경찰 수사권한 확보 추진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45)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회의 자료 8면 인용
46)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회의 자료 8면 인용

「병역면탈 범죄 방지대책」을 마련하였고, 2009년 10월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동 대책을 보고하였다.[47)]

그 후속조치로 2010년 4월부터 법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병무청 직원에게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면탈행위, 병역판정검사 등의 대리수검 행위 단속 권한을 특별사법경찰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정부입법을 본격 추진하였다.[48)] 법률 개정안은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2년 4월 18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명실상부한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49)]

2.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법적 근거와 직무범위[50)]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병무청의 특별사법 경찰의 법적 근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병무청의 경우에는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 기피 · 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고 있다.[51)]

이러한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 되고 있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병무사범의 모든 영역에 대해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병역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 기피 · 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범죄와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에 한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52)]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6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겠다

47)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회의 자료 8면 인용
48)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회의 자료 8면 인용
49)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회의 자료 8면 인용
50) 이러한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을 바꾸어 제5장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5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1호
5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8호

제2절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직 현황

1.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직 개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직은 본청 병역조사과와 2개 지방청 광역수사 담당 조사과(서울청, 대구·경북청 병역조사과), 12개 지방청에서의 현장단속으로 구성되어 있다.[53)]

본청에는 11명의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제도·정책, 기획·과학수사, 사이버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지방청의 광역수사 담당 조사과에서는 17명(서울청 9명, 대구·경북청 8명)이 권역내 병역면탈 범죄 광역수사를 담당하고 있다.[54)]

그리고 전국 12개의 지방청에는 청별 1명의 특별사법경찰이 병역판정검사장 등에서 현장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해 해당 권역을 담당하는 광역수사담당 지방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55)]

[표 3-1]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인력현황[56)]

(단위: 명)

계	본청	광역수사청		현 장 수 사 청											
		서울	경북	부산	경인	전남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북부	영동
40	11	9	8	1	1	1	1	1	1	1	1	1	1	1	1

* (본청) 수사 정책 · 기획, 광역수사 (광역청) 권역별 수사 (현장청) 검사장 등 현장단속

[그림 3-1]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직도[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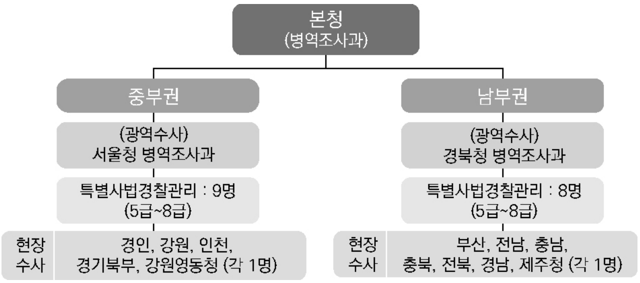

53)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회의 자료 12면 인용
54)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회의 자료 12면 인용
55)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회의 자료 12면 인용
56)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회의 자료 12면 인용
57)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회의 자료 12면 인용

2.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운영 현황

가. 병역면탈 수사 실적

2022년은 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그 동안 매년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 하였고, 14개 지방병무청에서 개별 진행되던 병역면탈 수사를 2016년부터 중부권과 남부권 2개 광역단위 수사체계로 개편하여 수사업무를 효율화하였다. 그 결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2022년 5월말 기준 550여 건의 범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58]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병역면탈 범죄의 연도별·유형별 수사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3-2] 연도별 수사실적[59]

('12.4.18 ~ '22.5월, 단위: 명)

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553	23	60	69	75	69	59	54	47	43	45	9

[표 3-3] 유형별 수사실적

('12.4.18 ~ '22.5월, 단위: 명)

계	정신질환 위장	고의 문신	고의 체중조절	안과질환 위장	기 타
553	149	101	150	23	130

※ 기타 : 척추질환 위장, 청력장애 위장, 허위장애등록, 학력속임, 고아위장, 수지절단 등

병역면탈 수법은 체중 증·감량, 문신, 수지절단 등 신체훼손 뿐만아니라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청력 손상을 일으키는 등 인위적으로 신체변화를 일으켜 은밀하게 실행하는 수법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60]

이처럼 병역면탈 수법이 다양화, 음성화됨에 따라 예방·단속과정에서 범죄의 사전 포착 및 입증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병무청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면탈범

58)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회의 자료 13면 인용
59)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회의 자료 13면 인용
60)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회의 자료 13면 인용

죄를 수사하고 있다.[61]

이를 위해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현황, 면탈 조장정보, 제보 증가 질환 등 내부자료 와 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외부 유관기관의 자료를 연계·분석하여 병역면탈 발생 가능성이 많은 특정 질환이나 특정 직업군, 신종 수법 병역면탈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62]

3. 병무청 특별사법 경찰의 주요 시설 및 수사 장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본청과 전국 14개 소속기관에 조사실을 두고 있으며, 각 조사실 별 피의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PC, 카메라, 마이크 등을 구비한 영상녹화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63] 또한 2017년과 2020년 각각 본청과 서울지방병무청에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하였다.[64]

[표 3-4] 주요 수사장비 보유현황[65]

장 비 명	사 용 처	수 량	비고
디지털포렌식 장비	디지털 증거 채증	2	본청, 서울청 각 1식
영상녹화장비	**피의자 인권보호 등**	15	본청, 14개 지방청 각 1식
디지털카메라	증거물 촬영	15	본청, 14개 지방청 각 1개
디지털녹음기	**진술내용 녹음**	15	〃
보안용 금속탐지기	**흉기 등 소지여부 탐지**	15	〃
수갑	**현행범 등 긴급체포시**	30	본청, 14개 지방청 각 2개
포승줄	**현행범 등 긴급체포시**	30	〃

61)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회의 자료 13면 인용
62)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회의 자료 14면 인용
63)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회의 자료 14면 인용
64)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회의 자료 14면 인용
65)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회의 자료 14면 인용

제3절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예산과 관할구역

1.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예산

2022년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예산은 2억9천7백여만 원으로 전년의 1억7천8백여만 원보다 1억1천9백여만 원 증액되었다. 2022년도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홍보예산과 과학수사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다.[66]

[표 3-5]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예산[67]

구 분	'21년도	'22년도		비고
	예산액	예산액	증액	
계	178,268	297,824	119,556	예산 약 3억원
일반수용비	13,150	104,150	91,000	병역면탈예방 홍보예산 증액
공공요금	4,399	4,399	-	업무용 핸드폰
피복비	6,825	6,825	-	
시설장비유지비	40,847	68,202	27,355	포렌식장비 유지비 증액
국내여비	47,743	47,744	1	
업무추진비	18,504	18,504	-	
특정업무경비	46,800	48,000	1,200	

66)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회의 자료 15면 인용
67)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회의 자료 15면 인용

2.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관할 구역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관할은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한정되어 있다.[68] 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관할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제43조에서 정한 관할구역에 따른다. 다만, 본청 소속의 특별사법경찰은 수사관할의 제한 없이 전국 수사가 가능하다.[69]

[표 3-6] 수사관할 및 관할 지방검찰청[70]

구 분	수사관할	관할 지검	구 분	수사관할	관할 지검
본 청	전 국	대전지검	강원청	강원지역	춘천지검
서울청	서울,경기 인천	서울남부지검	충북청	충북지역	청주지검
부산청	부산·울산 지역	부산지검	전북청	전북지역	전주지검
대구경북청	대구 · 경북	대구지검	경남청	경남지역	창원지검
경인청	경기지역	수원지검	제주청	제주지역	제주지검
광주·전남청	광주·전남지역	광주지검	북부지청	경기북부	의정부지검
대전·충남청	대전·충남지역	대전지검	영동지청	영동지역	춘천지검
			인천지청	인천지역	인천지검

68)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회의 자료 18면 인용
69)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회의 자료 18면 인용
70)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회의 자료 18면 인용

제 4 장 공정한 병역문화를 위한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 강화 방안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현황

제4장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현황

제1절 | 병역기피자·행방불명자 발생 현황 및 원인

1. 최근 5년간 병역기피·행불자 발생 현황[71]

('22.5.31.현재, 명)

구 분	병역기피자								행 불 자
	소 계		병역판정검사		현역입영		사회복무		
연평균	1,820	(71)	378	1,147	(65)	295	(6)	1,868	461
2022년	64	-	5	48	-	11	-	78	4,602
2021년	359	-	91	203	-	65	-	335	822
2020년	358	-	81	198	-	79	-	330	197
2019년	496	-	108	316	-	72	-	522	37
2018년	543	(71)	93	382	(65)	68	(6)	603	29

* ( ) 는 종교적 신앙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현황
* 통지인원(5월말 기준) : 징집(49,251명), 모집(55,845명), 소집(17,433명)

2. 연도별 국외 미귀국자 발생 원인

('15년~'22.5.31.기준, 명)

구 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국외출국 병역의무자	30,730	56,122	197,702	774,216	783,826	549,890	446,911	334,737
미귀국자 (불법체류)	84	158	189	145	135	177	155	161
%	0.27	0.28	0.09	0.02	0.02	0.03	0.03	0.05

* 최근 5년('17～'21년), 연평균 160명 수준 발생
* 미귀국률 : 0.03% 수준

71)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간담회 자료 18면 인용

제2절 |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발생·색출·잔유 현황

1. 연도별 발생·색출·잔유 인원

('22.5.31.현재, 명)

구분	발 생 (A)								색 출 (B)								관리 인원 (A-B)
	소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이전	소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이전	
계	15,946	142	694	688	1,018	1,146	1,231	11,027	14,929	365	1,130	1,710	1,242	908	1,072	8,502	1,017
기피	9,264	64	359	358	496	543	740	6,704	8,856	143	560	1,130	546	370	539	5,568	408
행불	6,682	78	335	330	522	603	491	4,323	6,073	222	570	580	696	538	533	2,934	609

* 기피자 관리인원 : 재판중, 수사중, 기소중지
  - 법 제87조, 제88조 정당한 사유 없는 징·소집 등 기피자(3년이하 징역)

* 행불자 관리인원 : 소재파악 불가능자
  - 법 제84조의 거주이전신고 불이행, 통지서 전달이 불가능한 사람(200만원이하 벌금)

제3절 |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형사처분 현황

1. 병역 기피자 형사처분 현황

('22.5.31.현재, 명)

구 분	발생 (A)	색 출 (B)								재판, 수사, 기소중지 (A-B)
		소계	징역	집유/선유	벌금	무죄/무혐의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기타	
계	1,820	1,355	169	761	9	133	166	1	116	465
2022년	64	1					1			63
2021년	359	110	5	57	0	6	30	0	12	249
2020년	358	259	29	167	2	13	26	1	21	99
2019년	496	459	80	249	3	25	56	0	46	37
2018년	543	526	55	288	4	89	53	0	37	17

* 형사처분 현황 : 90.4% / 기타 : 병역이행, 역종변경, 사망, 병적제적 등
(종교적 신앙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에 따라 색출률 증가)

2. 행방불명자 형사처분 현황

('22.5.31.현재, 명)

구분	발생 (A)	색 출 (B)								기소중지 등 (A-B)
		소계	징역/집유	벌금	무죄/무혐의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수사/재판중	기타	
계	1,868	1,341	13	250	30	87	4	38	919	527
2022년	78	19		1		1		4	13	59
2021년	335	135		9	2	8		6	110	200
2020년	330	247	2	32	4	10		4	195	83
2019년	522	416	3	84	12	32	2	6	277	106
2018년	603	524	8	124	12	36	2	18	324	79

* 형사처분현황 : 84.3% / 기타 : 소재파악, 병역이행, 역종변경, 사망 등

제 5 장 공정한 병역문화를 위한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 강화 방안

병무사범 관련 법령 검토

제5장

병무사범 관련 법령 검토

제1절 | 병무 사범 관련 법령 검토

1. 정의

먼저 병무사범이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병역법 제8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 및 그 밖의 병역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고용주를 포함한다) 및 법인 등을 말한다.[72) 병역 기피자란 병역법 제87조 제3항 및 제88조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대체복무요원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라 한다)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소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73) 또 병역면탈이란 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와 법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대리하여 수검하는 행위를 말한다.[74) 마지막으로 행방불명자란 병역의무자나 그 가족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병역판정검사·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대체복무요원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라 한다)를 전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75)]

72)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병무청 훈령) 제3조 제2항
73)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병무청 훈령) 제3조 제3항
74)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병무청 훈령) 제3조 제4항
75)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병무청 훈령) 제3조 제5항

2. 병무사범의 구체적 검토

가. 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76], 제40조[77] 또는 제67조 제2항[78]에 따른

---

76) 「병역법」 제23조의 3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이하 이 절에서 "해운업체등"이라 한다)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그 해운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던 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2. 승선하거나 하선한 경우
3. 항해사 · 기관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4.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5.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3년간의 승선근무기간(이하 "승선근무기간"이라 한다)을 마칠 수 없는 경우
6.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7. 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 · 영업정지 · 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77) 「병역법」 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 그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2.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경우에는 옮긴 후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한 경우
4.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5. 휴직하거나 정직된 경우 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부터 전입한 경우
6.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휴업 · 영업정지 · 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7.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나.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경우
다. 제37조제3항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8) 「병역법」제67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서 전시 국가동원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방위산업체 등에 복무하는 사람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다.
② 고용주(고용주를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 제1항 또는 제2항[79]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80] 그리고 제69조 제1항[81]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82]

나. 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83]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이 퇴직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후순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9) 「병역법」제3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라 경고 처분된 경우
3.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4.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되거나 이동한 경우
5.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0) 「병역법」 제84조

81) 「병역법」 제69조(거주지이동 신고 등)
병역의무자(현역 및 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82) 병역법 제84조 제2항(실무상 행방불명자라고 분류한다)

83) 「병역법」 제85조; 관련 조문 「병역법」 제6조(병역 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다만,

다. 도망 · 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84]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85]

라.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86]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87]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88)]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시 · 사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송달기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그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수령사실의 확인으로,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雇用主)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전단에 규정된 사람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병무청장이 정하는 통지서와 반송된 통지서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⑦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송달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자송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4) 해당 조문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가능 조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병역 기피 · 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다.
85) 「병역법」 제86조
86)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가능 조문이다. 여기서도 오직 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대리하여 신체검사는 받는 자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다. 특히 입영판정검사는 제외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
87) 「병역법」 제87조 제1항

마. 입영의 기피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 부터 현역입영은 3일, 사회복무요원 · 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 군사교육소집은 3일,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89)]

다만, 전시근로소집[90)]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91)]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92)] 다만,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93)]

바. 대체역 편입의 허위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94)]

---

88) 「병역법」 제87조 제2항
89) 「병역법」 제88조 제1항
90) 관련 조문: 「병역법」 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① 전시근로소집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제44조제2호의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
2. 전시근로역(「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외국의 법령에 따라 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의2. 대체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3.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하여는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기간은 연간 2일 이내로 한다.
91) 「병역법」 제88조 제1항 단서
92) 「병역법」 제88조 제2항
93) 「병역법」 제88조 제2항 단서
94) 「병역법」 88조의 2

사.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95)]

아.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공익법무관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공중방역수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제40조 제2호[96)]에 따른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제39조 제3항 단서[97)]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경우에는 옮긴 후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

95) 「병역법」 제89조

96) 「병역법」 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 그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경우에는 옮긴 후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97) 「병역법」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다.
1.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3.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편입이 취소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98)]

자.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예술 · 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제33조 제2항 제6호[99)]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제3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100)], 제33조의10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101)]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제33조 제2항 제7호, 제33조의10 제2항 제8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

---

98) 「병역법」 제89조의 2

99)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6.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100)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3의2.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 · 정서적 · 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1) 「병역법」 제33조의10(예술 · 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② 예술 · 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예술 · 체육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해당 분야의 복무와 관련하여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제33조의8제6항제3호에 따른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7. 제33조의11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제33조의10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02)]

차.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용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03)]

카.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50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104)]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제50조 제3항에 따라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은 사람,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따른 소집에 응하여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소집에 응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05)]

파.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복무 중 조직적인 정치운동에 관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2) 「병역법」 제89조의 3
103) 「병역법」 제89조의 4
104) 「병역법」 제90조 제1항
105) 「병역법」 제90조 제2항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106)

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공무원 ·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 · 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07)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108)

거. 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공무원 · 의사 · 변호사 또는 종교인 등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 · 진단서 · 확인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09)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110)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1)

너.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

고용주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하도록 한 경우와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2)

---

106) 「병역법」 제90조의 2
107) 「병역법」 제91조
108) 「병역법」 제91조 단서
109) 「병역법」 제91조의 2 제1항
110) 「병역법」 제91조의 2 제1항 단서
111) 「병역법」 제91조의 2 제2항
112) 「병역법」 제92조 제1항

고용주나 국가기능검정 또는 면허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제6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13]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특정인이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14]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아닌 사람이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병역지정업체에 특정인이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5] 위에 따른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6]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117]

더.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공익목적 외의 분야에 복무하게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8]

러.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

고용주가 제76조 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재직 중인 사람을 해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3조 또는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학 또는 복직을 거부한

113) 「병역법」 제92조 제2항
114) 「병역법」 제92조 제3항
115) 「병역법」 제92조 제4항
116) 「병역법」 제92조 제5항
117) 「병역법」 제92조 제6항
118) 「병역법」 제92조의 2

경우에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거나 징집·소집 등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9)

머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20)

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21)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22)

제37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을 관리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고용주는 제외한다)이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119) 「병역법」 제93조
120) 「병역법」 93조의 2
121) 「병역법」 제94조 제1항
122) 「병역법」 제94조 제2항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23)]

제77조의4제2항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한까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24)]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25)]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126)]

병무청장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한다.[127)]

서. 양벌규정

고용주나 병역지정업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고용주나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제84조 제1항 제1호,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제8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92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28)].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29)]

123) 「병역법」 제95조 제1항
124) 「병역법」 제95조 제2항
125) 「병역법」 제95조 제3항
126) 「병역법」 제95조 제4항
127) 「병역법」 제95조 제5항
128) 「병역법」 제96조
129) 「병역법」 제96조 단서

[표 5-1] 병역법상 처벌 규정 정리

사 유	내 용	벌 칙	법 조항
병역면탈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제86조
대리수검	병역판정검사 등을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검사받은 사람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제87조 제1항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예술 · 체육요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정당한 사유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제89조의2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예술 · 체육요원이 근무태만 등으로 4회 이상 경고 또는 무단 조퇴, 근무지 이탈 등으로 8회 이상 경고	1년 이하의 징역	제89조의3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공무원 · 의사 등으로서 병역을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 · 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제91조
행방불명자	병역의무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제84조 제2항
병역판정검사 기피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를 기피	6개월 이하의 징역	제87조 제3항
징 · 소집 기피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제88조 제1항
징 · 소집 대리 입영	입영, 소집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 소집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제88조 제2항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 · 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제89조
동원훈련기피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에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제90조 제1항
동원훈련 대리 참석	동원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참석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제90조 제2항
전문연구요원 편입 및 복무의무 위반 등	산업/전문요원의 편입 또는 전직 위반, 비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한 경우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2조 제1항
기피목적의 국외 불법체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외에 불법체류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제94조 제1항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허가 없이 출국 · 체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제94조 제2항

제2절 |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1. 「병역법」 제76조

「병역법」제76조에서는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제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고용주에 대해 일정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병역기피자에 대해 임용제한 및 해직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각종 관허업의 특허를 제한 하고 있고,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징집 · 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30]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징집 · 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 ·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특허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31]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징집 · 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이 관허업(官許業)의 특허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32]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133] 병무청장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

130) 「병역법」 제76조 제1항
131) 「병역법」 제76조 제2항
132) 「병역법」 제76조 제3항
133) 「병역법」 제76조 제3항 단서

자치단체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13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 ·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특허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35)]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36)]

134) 「병역법」 제76조 제4항
135) 「병역법」 제76조 제5항
136) 「병역법」 제76조 제5항 단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개선 방안

제6장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개선 방안

제1절 | 병무사범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 논의

1.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도입 및 확대 논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02년 병무청에 병역법 전반에 대한 수사권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변호사협회에서 수사권의 오남용 우려를 제기 해 수사권 도입논의가 중단되었다. 다시 '07년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분야에 대해 수사권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법무부에서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하여 다시 도입이 중단되었다. 이후 '12년 현재 '신체 손상 등 병역면탈' 분야로 한정된 수사권이 도입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는 어떠한 행정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병무사범에 대한 적발과 이에 대한 합당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수사권의 확대를 위해 국회에서도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권의 범위 확대와 관련된 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 먼저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사법경찰권의 확대 논의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제2절 |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사법경찰권 수사권 확대(안)

1. 분류지표의 개발배경 및 사용목적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7]

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병무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가 주로 신체검사 과정에서의 병역면탈행위에 대한 적발 위주로 한정되어 있어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및 복무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및 복무위반 행위를 감독하는데 있어 병무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해 병역법 위반 행위 적발 및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법안을 제안 한다”고 밝혔다.[138]

나. 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
1. ~ 40. (생 략)	1. ~ 40. (현행과 같음)
41.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1. --------------------단속 사무,-----------------------신체검사 사무, 입영의 기피 등에 관한 단속사무,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에 관한 단속 사무 및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단속 사무-----------
42. ~ 53. (생 략)6	42. ~ 53. (현행과 같음)

137) 2020. 11.25. 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138) 의안번호 572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 --------------------------------- ----------------------------.
1. ~ 37. (생 략)	1. ~ 37. (현행과 같음)
38. 제5조제4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병역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범죄와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	38. ------------------------------ -------------------------------- -------「병역법」 제86조, 제89조의2, 제89조의3, 제91조에 규정된 범죄
39. ~ 50. (생 략)	39. ~ 50. (현행과 같음)

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

특별사법경찰은 ①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된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고, ②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범죄 수사를 도모할 수 있는 등의 취지에서 1956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2019. 12. 31.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이 약 11,000명,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이 약 9,000명에 이르고 있다.[139]

최근에는 법 개정으로 ① 검역공무원과 방역관, 역학조사관에게 검역법 위반범죄에 대하여, ② 동물보호감시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에게 동물보호법 위반범죄에 대하여, ③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고용보호법 등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④ 국토교통부 시설물 긴급안전점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⑤ 부동산 조사·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주택법 등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특별사법경찰이 확대되었음. 이에 더하여 2018. 12. 18. 일부개정을 통하여 특허청 공무원에게「특허법」상의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행위,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권 또는

13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박철호, 7면 인용

전용실시권 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의 취득 · 사용 · 누설행위 등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재차 확대되고 있다.[140]

이러한 이채익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전문위원은 현재 병무청 소속공무원에게는 병역법 제86조의 병역면탈행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러한 병역면탈 행위에는 통상 허위의 증명서 또는 진단서 발급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여 기존에 부여된 병역면탈 관련 직무범위에 병역법 제91조에[141] 따른 공무원·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범죄를 추가하는 것은 단속 및 수사업무의 밀접성을 고려하고,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범죄는 최근 5년간 총 1,269건, 및 복무의무위반 범죄는 최근 5년간 총 72건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 볼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 개정안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142]

다만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본질적 한계와 관련하여,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의 비전문가로서 이들에 대해 인신구금 등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강제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권 및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수사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정을 내실화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143]

14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박철호, 7면 인용
141) 병역법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공무원 ·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 · 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14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박철호, 8면 인용
14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박철호, 13면 인용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4]

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병무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가 신체검사 과정에서의 병역면탈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대체역의 허위편입 및 허위증명서 발급에 관한 단속에 한계가 있어, 현재 병역면탈행위 등의 단속에 종사하는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게 대체역 편입의 허위에 관한 단속 사무 및 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대체역 편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145]

나. 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40. (생 략)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 1. ~ 40. (현행과 같음)
41.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2. ~ 53. (생 략)6	41. ---단속 사무,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 대체역 편입의 허위에 관한 단속 사무, 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단속 사무---------- 42. ~ 53. (현행과 같음)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144) 2021. 5. 3.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145) 의안번호 9887 제안이유 참고

현 행	개 정 안
1. ~ 37. (생 략)	1. ~ 37. (현행과 같음)
38. 제5조제4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병역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범죄와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	38. -- 「병역법」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8조의2 및 제91조의2에 규정된 범죄
39. ~ 50. (생 략)	39. ~ 50. (현행과 같음)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평가

제21대 국회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2건의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민철홍의원 대표발의 안은 대체역의 허위편입 및 허위증명서 발급에 관한 단속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며, 두 번째 이채익 의원 대표안은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및 복무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자는 개정안이다.

두 개정안 모두 시의 적절한 개정안으로 보인다. 대체역 복무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이탈 역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병역법에서는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체역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국민은 특혜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대체역의 경우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양심의 일관성과 진정성을 파악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종교 활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나,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체역에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체역 편입에 대한 허위 조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은 필요해 보인다. 다만 병무청과 별개로 대체역심사위원회가 있고, 대체역심사위원회에서 실제 대체역 편입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사실상의 병무청과 독

립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양기관 중 어느 기관이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고 갈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일반 사병과 달리 근태가 비교적 자유로운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복무이탈은 심각한 병역 문화의 공정성을 해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권의 부여는 필요하다.

현재 개정안에서 제안된 대체역 편입의 허위와 사회복무요원을 복무이탈은 일반 경찰에서 다루어지는 것에 비해 관련 부서인 병무청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3절 | 병무사범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개선 방안

1.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범위 확대 논의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 범위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146] 및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대리수검자[147]로 한정[148]되어 있다는 점을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회에서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의로운 병영문화를 확립한다는 의미에서 병무청에게 특별사법경찰 수사 범위를 확대하자는 논의는 필요하다. 사회복무요원의 이탈 등 및 대체역 편입관련 서류 위변조에 대해서 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 역시 이러한 병역 공정성 확보의 연장선에 있다고 평가를 하였다.

여기에 더해 병역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낮은 단계의 위반행위를 통해 병역을 지능적으로 면탈하면서도 국가가 부여하는 복지해택을 누리는 병무사범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수사권 부여가 더 필요하다. 이 부문이 바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전하고 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행방불명자'문제다. 목차를 바꾸어 병무청이 왜 '행방불명자'에 대한 문제점과 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와 수사 범위에 들어오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겠다.

2.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에 '행방불명자' 포함 여부

가. 병역의무자의 전입신고 적용과 처벌의 문제점

병역법 제69조는 **병역의무자**(현역 및 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149]에 따라 전입

146) 「병역법」 제86조 참고
147) 「병역법」 제87조 참고
14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8호
149)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150)]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전입신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없어**[151)]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84조 제2항[152)]을 적용해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자로 **경찰관서에 고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본 조항은 거짓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주소에 병역의무자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면 그 주소가 거짓인지를 알 수 있지만 병역의무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전입신고 불이행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있다면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송요청을 받은 전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轉出對象者)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전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④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면 제1 항에 따른 전입신고서와 대조·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0) 「병역법」 제69조

151)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대리 검사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다는 점은 앞에서 상론하였음

152)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② **제69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을 때만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처벌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여 보겠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 ‘행방불명자’를 찾아, 수사를 통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밝혀,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100% 구약식**153) **사건**이 된다. 결론적으로 ‘행방불명자’가 전입신고 위반이 확정된다고 할지라도 ‘행방불명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최대 200만원의 벌금이다. 벌금 200만원 나오지도 않는다는 의미다. 구약식으로 벌금이 확정되어도 현금서비스를 통해 납입하거나, 또 도망 다니면 된다. 전국 검찰청에서 벌금미납자 집행이 100%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병역을 회피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를 위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보다 더 크다면 누구나 범죄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현행 병역법 제69조 제2항은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기에는 처벌하기 위한 **구성요건도 지나치게 어렵고 너무 그 처벌의 강도가 약**하다.

국방의 의무는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의무이며, 공정한 병역을 위해서는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이 확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중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전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라면 **언제든지, 어디서나, ‘행방불명자’의 숫자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나. 병역의무자의 전입신고 위반 후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의 심각한 문제점

더욱더 심각한 것은 2020년부터 ‘행방불명자’문제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일으켰다. 병역 의무자가 거주지를 다른곳으로 이전한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재는 **병역의무자 중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행방불명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행방불명자’도 정부에서 지급하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고 또 수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병역의무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행방불명자’가 되면 적시에 병역의무를 이행할

153) 정식 재판절차가 아니라 검사가 벌금액을 정해 법원에 서면으로 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벌금액을 선고형으로 하여 재판절차가 종결되는 것을 말함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이 발생한다. 즉 병역의무를 사실상 해태하고 있으면서도 국가에서 지급되는 혜택은 전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있다.

다. 행방불명자의 수사방법의 문제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행방불명자'는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병역의무자가 거주를 이전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154]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에 해당"할 수 있지만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권이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방병무청장의 입장에서는 경찰에 고발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경찰의 입장에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고, 또 진행하고 있는 강력범죄가 있다. **지방병무청장의 고발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현안의 수사를 재쳐 두고 '행방불명자'에 대한 소재파악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이다. 살인죄의 경우 그 처벌이 사형, 무기징역,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전입신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을 신고한 경우는 200만원의 벌금이 최고 형종이다. 현안을 놓고 '행방불명자'에게 집중할 수 없는 이유다.

성인 실종 경우에도 실종 여부를 놓고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거짓신고로 인한 고발이 아니라 병역의무자의 전입신고 해태로 인한 '행방불명자'의 경우에는 전입신고 하지 아니하였다는 상황적 요건만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전입신고 해태를 이유로 **지방병무청장이 고발을 해도 그 고발이 과연 병역법 제8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경찰은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발을 하는 병무청이 첫째, 병역의무자가 거주를 이전하고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둘째, 그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발장에 명시해야 하는데 수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여부에 대해서**

15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8호에서는 오직 "제86조에 규정된 병역 기피 · 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만을 직무범위에 포함하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는 포함시켜 놓고 있지 않다.

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행방불명자'들에 대한 지방병무청장의 고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안이 존재하고 또 발행하는 상황, 한정된 인력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벌금 200만원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는 점, 병무청의 고발 만으로 바로 위법이라는 것이 파악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병역법 제61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55] 다만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결국 행방불명자의 신원이 발견되기 전까지 병역의 처음과 마지막을 담당하고 있는 병무청은 행방불명자를 찾아 병역의무를 부과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정의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모든 국민께서 동의하실 것이다.

3. 개선방안

가. 병역법 제86조 수사권 범위 확대 방안

먼저 **병역법 제86조에 특별사법경찰권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현재는** 병역기피하거나 감면 목적 신체손상, 속임수를 쓴 경우에만 수사권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수사권 확대지만 같은 조항에서 빠져있던 수사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병역의무가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155)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사람을 고발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 제86조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행방을 감춘 사람을 수사권에 포함시키는 경우** 병역의무가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하지 않는 경우, 현재와 같이 고발조치가 아니라 직접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행방불명자'가 된 경우 수사대상에 포함하여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행방불명자'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에 포함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 거주지 이전 14일 후에 **전입신고를 해태하거나 부득이하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병역법상 가장 강력한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는'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소를 추정해 이를 근거로 수사를 개시한다는 것은 수사 개시의 상당성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행방불명자에 대한 소재확인을 위한 활동 시 고용보험, 국민연금, 취업이력 등을 조회하게 되는데 대다수가 가입 이력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취업 은폐 등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거나 불우한 가정환경 등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사회에 나와 생활 할 수 있도록 **범죄행위는 처벌을 받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경위를 면밀히 살펴 생계곤란 또는 질병 등 사유 병역감면 또는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도 필요하다.**

나. 병역법 제69조 제1항 위반자에 대한 수사권 확대 방안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의 범위를 「병역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 기피 · 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범죄와 같은 법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에 외에 추가로 **「병역법」 제61조에 규정된 '행방불명자'에 대해 수사권을 명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수사권 추가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은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된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되었는데, **행방불명자의 수사는 병무청의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포함되지 않고, 행불자 수사에 전문지식을 동원할 필요성이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의 존재의의 중 하나가 일반경찰의 인력의 한계, 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인해 제약이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범죄 수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행방불명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병역의무자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병역과 관련된 영역에서 발생된 사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도망하는 경우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 이행일을 연기하고 있다. 다른 어떤 입영연기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행방불명자'의 **나이가 38세에 이르게 되면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병역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행방불명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을 직접 수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가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상황, 병역의무를 해태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혜택은 전적으로 누리고 있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도덕적 해이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침해를 방지한다는 정당성이 인정되고, 다른 병무사범과의 연계성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권 도입이 필요하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사실상 병무청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반면,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소집 행방불명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았고 본인이 향후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 소집대상임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수사권 확보 범위를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소집 행방불명으로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행방불명자 수사권 부여를 전제로 행방불명자의 개인정보 자료 요청권

다만 행불자에 대한 수사권이 마련된다고 할지라도 행불자에 대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행불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그 수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병역법 제81조는 **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사항 확인·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병무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병역이행사항 확인·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요청 자료에는 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복직보장,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자료, 병역처분변경에 필요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실의 확인을 위한 자료, 영리활동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병역관계 자료, 그 밖에 병역관계 법령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 여부의 확인·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156]

현재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게 행방불명자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어 행방불명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행방불명자'의 첫 수사는 바로 행방불명자의 소재파악에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필요하다. 다만 개인정보가 불법하게 오·남용될 수 있는 경우를 많이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종류를 명시하고, 이를 취득한 자료를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국방부와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최고수준의 징계와 처벌 규정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

156) 「병역법」 제81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59조

다만 개인정보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에서 행방불명자의 수사권이 부여되는 경우 **행방불명자의 개인정보의 범위와 종류를 병역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개별적인 사건마다 개인정보의 범위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4. 특별사법경찰 광역 수사 체계 개편 방안

현재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직은 본청(병역조사과)과 2개의 지방청 소속 광역수사 담당 조사과(서울청, 대구·경북청 병역조사과), 12개 지방청에서의 현장단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청에는 11명의 특별사 법경찰이 수사제도·정책, 기획·과학수사, 사이버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광역수사 담당 지방청의 조사과에서는 17명(서울청 9명, 대구·경북청 8명)이 권역내 병역면탈 범죄 광 역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 12개의 지방청에는 청별 1명의 특별사법경찰이 병역판정검사장 등에서 현장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해 해당권역을 담당하는 광역수사담당 지방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157)

그러나 최근 병역면탈 범죄의 지능화 및 다양화, 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 기준의 강화, 수사인력 증원 곤 란 등 현재의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효율적 수사를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현 조직 운영상 현장단속 업무의 개편이 시급하다. 현장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청에 근무하는 12명의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사법경찰 업무 외에 별도의 병무행정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병무사범 단속 업무에 집중이 곤란하며, 전문성 축적에도 어려움이 많다. 또한 관할 지역 병역자원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각 청 1명씩 특별사법경찰이 배치되어 각 청의 수사업무 환경이 고르지 못한 현실이다. 더욱이 2021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에 따른 문신사유 보충역 처분기준 폐지로 그간 주요 단속대상이었던 고의 문신 병역면탈 적발 요인이 대폭 감소 하였다.158)

이와 같은 현재의 업무환경을 고려해 볼 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업무 전념과 수사**

157) 이채익 의원 입법 발의('20.11.25.), 민홍철 의원 입법 발의('21.5.3.)

158) 고의문신 혐의 검찰 송치현황 : ('21년) 4명, ('20년) 16명, ('19년) 11명, ('18년) 9명, ('17년) 12명

전문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2개 지방청의 현장단속 업무 폐지와 대구·경북청의 관할 수사권역 지역의 일 부를 조정하여 충청·호남권 광역수사를 관할하는 지방청에 1개 조사과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조직 개편 시에는 12개 지방청의 해당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병역자원 등을 고려하여 **서울청(병역조사과) 인력의 일부 증원과 신설 광역수사 관할 지방청으로 재배치하고, 대구·경북청은 신설 광역수사 관할 지방청으로 일부지역의 수사관할 이전을 고려하여 인력을 감원**해야 할 것이다.

결 론

제7장

결 론

병역법 제69조는 **병역의무자**(현역 및 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159]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160]

그러나 병무청에 '행방불명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84조 제2항[161]을 적용해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자로 경찰관서에 고발하고 있으나

159)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송요청을 받은 전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轉出對象者)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전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이송하여야 한다.
④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면 제1 항에 따른 전입신고서와 대조·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0) 「병역법」 제69조

161)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② 제69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쉽게 협조를 요청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의 협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먼저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 적용에 있다**. 전입신고 불이행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있다면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을 때만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처벌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여 보겠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 '행방불명자'를 찾아, 수사를 통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밝혀,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100% **구약식**162) **사건**이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안이 있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행방불명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2020년부터 '행방불명자'문제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일으켰다. 병역 의무자가 거주지를 다른곳으로 이전한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재는 **병역의무자 중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행방불명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행방불명자'도 정부에서 지급하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고 또 수령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방불명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61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63) 다만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하는 수 밖에 없다.**

결국 '행방불명자'의 신원이 발견되기 전까지 병역의 처음과 마지막을 담당하고 있는 병무청은 행방불명자를 찾아 병역의무를 부과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이 정의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모든 국민께서 동의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행방불명자'에 대한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162) 정식 재판절차가 아니라 검사가 벌금액을 정해 법원에 서면으로 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벌금액을 선고형으로 하여 재판절차가 종결되는 것을 말함

163)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그 방법으로 **병역법 제86조에 특별사법경찰권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현재는** 병역기피하거나 감면 목적 신체손상, 속임수를 쓴 경우에만 수사권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수사권 확대지만 같은 조항에서 빠져있던 수사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의 범위를 「병역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범죄와 같은 법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에 외에 추가로 **「병역법」 제61조에 규정된 '행방불명자'에 대해 수사권을 명시하는 방법**이다.

'행방불명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병역의무자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병역과 관련된 영역에서 발생된 사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도망하는 경우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 이행을 연기하고 있다. 다른 어떤 입영연기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행방불명자'의 **나이가 38세에 이르게 되면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병역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행방불명자'에 대해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는 경우 **행방불명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되어야 한다.**

병역법 제81조는 **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사항 확인·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병무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병역이행사항 확인·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행방불명자'의 첫 수사는 바로 행방불명자의 소재파악에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필요하다. 다만 개인정보가 불법하게 오·남용될 수 있는 경우를 많이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종류를**

명시하고, 이를 취득한 자료를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국방부와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최고수준의 징계와 처벌 규정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인정보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에서 행방불명자의 수사권이 부여되는 경우 **행방불명자의 개인정보의 범위와 종류를 병역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개별적인 사건마다 개인정보의 범위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업무 전념과 수사 전문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2개 **지방청의 현장단속 업무 폐지와 대구·경북청의 관할 수사권역 지역의 일부를 조정하여 충청·호남권 광역수사를 관할하는 지방청에 1개 조사과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조직 개편 시에는 12개 지방청의 해당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병역자원 등을 고려하여 서울청(병역조사과) 인력의 일부 증원과 신설 광역수사 관할 지방청으로 재배치하고, 대구·경북청은 신설 광역수사 관할 지방청으로 일부 지역의 수사관할 이전을 고려하여 인력을 감원해야 할 필요성도 보인다.

참고 문헌[164)]

안정진,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이영희,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징병검사 병역면탈 범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164) 본 ‘공정한 병역문화를 위한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 강화 방안’연구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권 행사 중 단속관련 수시과제로 매우 구체적인 영역에 있어서 연구 과제임 이러한 점에서 참고 문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힘

Abstract

Measures to prevent and strengthen crackdowns on conscription offenders for a fair military service culture

Soung Jea Hyen

Military service compulsory personnel are required to report moving in when moving from one place of residence to another. In this case, if there is no 'reasonable cause', you will be punished. There are practical difficulties for the police to actively conduct investigations on 'missing persons'. After finding the 'missing person', the investigation reveals that there is no justifiable reason. For this reason, it is clear that there are practical difficulties for the police with pending issues to actively investigate the 'missing person'.

Currently, among those obligated to do military service, "missing persons" who have not registered for transfer are also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is reason, 'missing persons' can and are receiving 'COVID-19 special disaster support' provided by the government.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s special judicial police powers need to be given to 'missing persons'.

In this way, Article 86 of the Military Service Act expands the scope of investiga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powers. Currently, the investigative power is limited only to cases of evasion of military service, bodily harm, or deceit for the purpose of reduction or exemption. Although it is an extension of the existing investigative powers, it is to expand the scope of investigations that were missing from the same provisions.

Next, the scope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investigation by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is specified in Article 6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to specify the right to investigate the ‘missing person’.

I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s special judicial police authority is granted to "missing persons", the authority to request personal information of missing persons must be prepared.

Accessibility to necessary personal information is necessary in that the first investigation of 'missing person' is to find out the whereabouts of the missing person. However, since we have experienced many cases in which personal information can be illegally misused, the scope and type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can be requested must be specified.

The status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should be provided to relevant organiza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n case of viola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highest level of disciplinary and punishment regulations together.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on-site enforcement work of 12 local offices in order to concentrate on the investigation work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n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on expertise and manpower oper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organizational reorganization by adjusting a part of the investigation area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Daegu and Gyeongbuk Offices and establishing one investigation division in the regional offices that have jurisdiction over the Chungcheong and Honam regions.

연구총서 22-AB-05

공정한 병역문화를 위한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 강화 방안

발　　행 | 2022년 11월
발 행 처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 행 인 | 하 태 훈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j.re.kr
정　　가 | 7,000원
인　　쇄 | 한결엠 02)852-7365
I S B N | 979-11-91565-63-8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제 및 복제를 금함.